

2026년 8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7233)

**제목: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1)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이하 "ACT")는 대규모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대한민국 이용자로부터 얻는 국내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대 2퍼센트의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안(의안번호 2219551, 이강일의원 등 10인 발의)에 대하여 정중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ACT는 전 세계 소규모 기술 개발자 커뮤니티를 대표합니다. 저희 회원사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는 독립 개발자,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술 기업입니다. 저희 역시 공정하고 현대적인 조세 제도라는 목표에 뜻을 같이하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본 개정법률안이 도입하려는 디지털서비스세가 그러한 목표에 오히려 배치되고, 저희가 대표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대한민국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며, 다자간 조세 논의 및 대한민국이 최근 밝힌 약속 모두와 어긋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¹

본 개정법률안은 다른 국가들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 특히 캐나다가 이후 폐지한 디지털서비스세와 동일하게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검색 및 스트리밍 기업과 같은 대규모 외국 제공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 기준 과세 제도는 최대 규모의 기업에만

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1, 이강일의원 등 10인 발의), 대한민국 국회, 2026년 6월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의안번호로 검색 가능.

머무르지 아니하고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가장 부족한 소규모 개발자와 사업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²

I. 디지털서비스세의 영향은 대기업을 훨씬 넘어 소규모 개발자에게까지 미칩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소득이 아니라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ACT가 통상 및 조세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해 온 바와 같이, 디지털서비스세는 디지털 경제에 부과되는 또 하나의 관세와 같이 작동하며, 데이터 라이선싱, 광고 및 이용자 기여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영업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과세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예외 없이 소규모 기술기업까지 그 영향권에 포함시킵니다.³

이는 다음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 디지털서비스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광고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규모 개발자가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바로 그 기반 시설이며, 이러한 서비스에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그 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전가됩니다. 캐나다의 사례는 이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캐나다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자 주요 플랫폼들은 사업자 고객이 부담하는 광고비 및 마켓플레이스 수수료에 비용 회수 목적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였고, 그 대상에는 애초에 과세 대상으로 의도되지 아니하였던 소규모 광고주와 판매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서비스세의 부담은 법률에 명시된 대기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와 거래하는 하위 단계의 수많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2. 매출액 기준 요건 역시 겉보기만큼 소규모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과세 대상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하거나 과세 대상 광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과세 대상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발자는 자신의 규모와 무관하게 그 세부담을 간접적으로 흡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시장 접근 비용의 소폭 상승조차도 대한민국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인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² In-Soo Nam, South Korea's ruling party moves to tax overseas Big Tech on local revenue, KED Global (2026. 6. 30.), <https://www.kedglobal.com/policy/newsView/ked202606300004>.

³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 Digital Trade for Small Tech, <https://actonline.org/wp-content/uploads/Digital-Trade.pdf>.

II. 일방적 디지털서비스세는 다자간 해법을 저해하고 소규모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세 제도의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AC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통하여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자간 노력과, 일방적 디지털서비스세를 국제 조세 체계에서 배제한다는 목표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체계는 조율되지 않은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가 난립하여 동일한 매출에 대하여 관할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과 같은 일방적 조치는 그러한 노력을 저해하는바, 이중과세를 초래할 소지가 있고, 총매출액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배분해 온 오랜 국제 규범에서 이탈하며, 다른 국가들의 유사 조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디지털서비스세가 확산되어 과세 제도가 파편화되는 것이야말로 소규모 개발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결과인데, 대형 다국적기업은 수십 개 국가의 개별 제도에 따른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조세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반면 ACT가 대표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그러한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 디지털서비스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국경을 넘어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드는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그 비용은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에 가장 무겁게 돌아가므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관할권 목록에 추가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대한민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과는 반대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⁴

⁴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OECD/G20 Pillar 1 and Digital Services Taxes: A Comparison, Rep. No. R47988,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988> (디지털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고, OECD/G20 체계가 일방적 디지털서비스세의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III. 본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이 최근 밝힌 약속과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서 한·미 양국은 “망 이용대가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고 공동으로 약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이용자로부터 매출을 얻는 외국 제공자에게 부과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서비스세는 이러한 약속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이러한 조세는 높은 매출액 기준과 시장소재국 기준의 매출 귀속을 전제로 설계되므로 그 부담이 외국 기업에 집중되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차별 문제를 야기하며 반복적으로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이론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본 법률안이 발의된 것과 같은 주인 2026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기존 관세에 더하여 100퍼센트의 관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며 이는 기존 통상 합의에도 우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거명된 국가에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저희는 귀 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⁵

캐나다가 자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밝아 온 경과와 그 전모를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5년 6월 29일 디지털서비스세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고 즉시 징수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디지털서비스세법」은 2026년 3월 26일 국왕 재가를 받은 「2025년 예산 이행법률 제1호」(Bill C-15)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그 효력은 동법 시행일로 소급되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미 징수한 약 6억 4,700만 캐나다달러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였습니다. 캐나다가 이와 같이 방침을 되돌린 것은 해당 조치가 통상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었고 그 비용이 법률에 명시된 대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귀착된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그 제도를 처음 도입한 국가가 이미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원상회복한 모델을 이제 와서 채택하게 되는 셈입니다.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통상 및 투자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차별적인

⁵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 11.),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5/november/fact-sheet-united-states-and-korea-agree-korea-strategic-trade-and-investment-deal>;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The White House (2025. 11. 14.),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2026. 6. 26. 관세 관련 발언에 관하여는 CNBC (2026. 6. 26.), <https://www.cnbc.com/2026/06/26/trump-tariff-trade-tech-tax.html> 참조.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것은 양국 정부가 해소하기 위하여 공들여 온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그 실익 또한 불확실합니다.⁶

IV. 본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개발자와 디지털 경제에도 피해를 줍니다

끝으로, 디지털서비스세의 피해가 외국 기업과 그 소규모 사업자 고객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술기업 역시 국내외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동일한 글로벌 플랫폼, 광고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인프라의 비용을 높이는 조세는 대한민국 개발자의 사업 비용 또한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일방적 디지털서비스세는 해외에서의 상응 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며, 그 부담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우위를 확보한 분야인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 수출 기업에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예측 가능한 결과는 대한민국 소규모 사업자와 소비자의 비용 증가 및 대한민국 디지털 수출기업이 직면할 마찰의 확대이며, 정작 의도한 세수 가운데 법률이 지향한 곳에 실제로 귀착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⁶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Canada rescinds Digital Services Tax to advance broader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2025. 6. 29.),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6/canada-rescinds-digital-services-tax-to-advance-broader-trade-negotiations-with-the-united-states.html>; Bill C-15,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2026. 3. 26. 국왕 재가, <https://www.parl.ca/DocumentViewer/en/45-1/bill/C-15/royal-assent> (디지털서비스세법을 소급하여 폐지); Gowling WLG, Legislation to formally repeal the Canadian DST introduced, <https://gowlingwlg.com/en/insights-resources/articles/2025/legislation-to-formally-repeal-the-canadian-dst-introduced>.

V. 결론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세제개편안의 국제조세 부분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이전가격을 다루고 있는바 이는 다자간 논의가 실제로 만들어 낸 조율된 수단입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가 본 법률안을 심사하시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조세정책을 소관하는 부처가 스스로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치에 대한 심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ACT는 귀 위원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아니하시고, 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를 통한 조율된 다자간 접근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러한 접근은 대한민국 소규모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소규모 개발자 커뮤니티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이 소중히 여겨 온 통상 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정합적인 길을 제공합니다.⁷

귀 위원회의 검토에 감사드리며, 본 법률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Brian Scarpelli

Senior Global Policy Counsel (수석 글로벌 정책 자문)

Jong Hun Chung

Policy Associate (정책 담당)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 (ACT)

⁷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https://www.mofe.go.kr/>; 삼일회계법인, Tax News Flash (2026. 8. 3.), https://www.pwc.com/kr/ko/insights/tax-news-flash/samilpwc_tax-news-flash_260803_kr.pdf (해당 세제개편안의 국제조세 부분이 글로벌 최저한세와 이전가격을 다루고 있음을 정리) 참조.

